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2025. 2.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목 차

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개관 ····· 4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4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5

Ⅱ. 아동반환 절차 개관 ····· 6

1. 아동반환 지원 신청 ····· 7
2. 중앙당국의 역할 ····· 7
3. 법원에 대한 아동반환 청구 ····· 7
4. 아동반환결정의 집행 ····· 8

Ⅲ. 아동반환결정 집행의 각 단계 ····· 10

1. 개관 ····· 10
2. 집행 前 단계 ····· 11
3. 집행 中 단계 ····· 14
4. 집행 後 단계 ····· 18

Ⅳ. 아동반환결정 집행 성공 사례 분석 ····· 20

1. 개관 ····· 20
2. 채권자 A 사건 ····· 20
3. 채권자 B 사건 ····· 21
4. 채권자 C 사건 ····· 22

Ⅴ. 집행 체크리스트 ····· 23

1. 집행 前 단계 ····· 23
2. 집행 中 단계 ····· 24
3. 집행 後 단계 ····· 24

Ⅵ. Q&A 및 중앙당국 연락처 ····· 25

별첨 ····· 28

1.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 29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46
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 52
4.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 56

I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개관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1980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협약'이라 합니다)은 국제결혼 관계에 있어 불법한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에 의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국가)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아동의 소재 파악,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등 중앙당국의 역할(협약 제7조), ②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아동반환 명령(협약 제12조), ③ 아동반환의 예외 사유(협약 제13조)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12. 12. 협약에 가입한 이래 협약상 중앙당국인 법무부에서 아동반환을 지원한 사건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접수 아동반환지원 연도별 사건 수]

2025. 2. 기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외국→한국 아동반환지원	0	5	5	7	1	2	7	9	1	9	14	7	67
외국→한국 면접교섭지원	0	2	1	1	2	0	1	0	1	2	0	1	11
한국→외국 아동반환지원	1	3	1	4	3	5	1	4	4	8	8	1	43
한국→외국 면접교섭지원	0	1	0	0	0	0	0	0	1	0	1	1	4
합계	1	11	7	12	6	7	9	13	7	19	23	10	125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2012. 12. 협약 가입 직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2013. 3.부터 동법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행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한민국으로 또는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절차(이행법률 제5조, 제8조), ②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행법률 제12조), ③ 아동반환 미이행 시 제재 수단(이행법률 제13조) 등이 있습니다.

Ⅱ 아동반환 절차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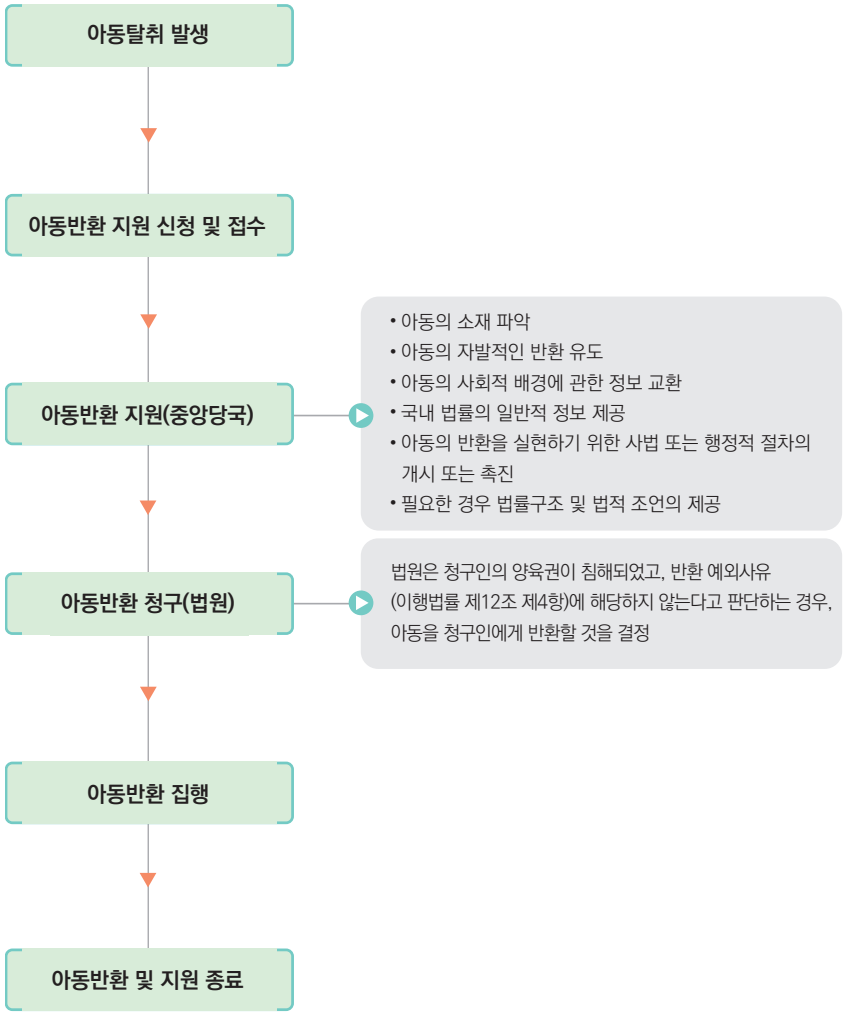

1. 아동반환 지원 신청

대한민국 또는 다른 체약국으로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 또는 유치됨으로 인해 양육권·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협약상 중앙당국인 법무부 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법률 제5조, 제8조).

*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에서 중앙당국 업무를 담당

2. 중앙당국의 역할

중앙당국인 법무부는 지원 신청을 받으면,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아동의 소재 파악, ② 아동의 자발적 반환 유도 등 분쟁의 우호적 해결 도모, ③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 교환, ④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⑤ 아동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또는 촉진, ⑥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협약 제7조).

3. 법원에 대한 아동반환 청구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중앙당국에 대한 지원 신청과는 별개로 관할법원(서울가정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행법률 제12조).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양육권이 침해되었고, 협약에서 정하는 반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 반환 예외사유로는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 경과,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 존재,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경우 등이 있음 (이행법률 제12조 제4항)

법원의 아동반환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일단 아동이 원래 있던 상거소국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이고, 아동의 향후 양육권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협약 제19조). 즉, 법원의 아동반환결정은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결정하는 종국 처분이 아니고, 양육권에 대한 판단은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된 후 상거소국의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4. 아동반환결정의 집행

법원의 아동반환결정의 집행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규에 따르면, 아동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합니다(위 예규 제2조 제1항).

2024. 4. 이전에는 아동반환결정의 집행에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2025. 1. 15. 재판예규 제18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25.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기존예규'라 합니다)'가 적용되었습니다.[1] 해당 예규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4. 1. 협약에 적용될 새로운 예규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이하 '신설예규'라 합니다)'가 제정되었고, 신설예규는 2024. 4.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설예규는 ①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기존예규의 문구를 삭제하고,* ② 아동의 복리를 고려하여 집행에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아동반환결정의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이 반환 절차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은 더 이상 집행불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아동의 거부 의사는 이미 아동반환청구 재판 절차에서 반환의 예외사유로 고려된 요소(이행법률 제12조 제4항)로서, 신설예규는 집행 단계에서 다시 아동의 거부 의사를 집행불능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1 한편 기존예규를 전부개정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가 2025. 2. 1. 시행되었는바, 전부개정 예규는 아동반환결정의 집행 외 유아인도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에도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집행보조자로서의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아동반환결정 집행의 각 단계

1. 개관

가. 집행관의 권한(신설예규 제4조)

신설예규는 집행관이 아동반환결정을 집행함에 있어 크게 3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의 연령, 아동의 양육 및 생활상황, 아동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설예규 제4조 제1항).

* 법무부는 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아동의 소재파악, 우호적 해결 유도,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 제공 가능

다음으로,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신설예규 제4조 제2항).

마지막으로,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신설예규 제4조 제3항).

* ▲아동이 있는지 수색,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 조치, ▲아동 또는 채무자를 집행보조자와 면접 조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조치 등

나. 집행관의 의무(신설예규 제3조)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발달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집행 前 단계

가. 정보 수집

집행관은 집행에 앞서 양육 및 생활상황,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아동의 신상 및 성격, 채무자와 아동의 애착 관계, 탈취 후 경과한 기간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개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으며, 같은 연령대라고 하여도 그 발달 정도가 다를 수 있는바, 아동에 대한 정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관은 **신설예규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당국(법무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집행보조자 선임

집행관은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아동 관련 전문가 및 경비노무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신설예규 제4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은 애착관계가 형성된 탈취 부모를 떠나 피탈취 부모에게 반환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바, 아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집행관은 ① 집행에 있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아동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집행이 수월해지며, ② 집행 과정에서 아동이 겪을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측면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집행관규칙 제26조 및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에 따라 경비노무자*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경비노무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집행관은 ① 아동반환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측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하고, ② 현장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해집니다.

* 특히 채무자가 여성인 경우 채무자의 저항에 따른 불가피한 신체 접촉에 대비하여 여성 경비노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집행관은 **신설예규 제4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전문가(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는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제2조, 제3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고 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집행관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집행관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아동 관련 전문가 명단은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집행장소 선정

집행장소는 통상 채무자의 주거지가 될 확률이 높으나, 그 외 아동의 주거지, 아동이 소재하는 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 채무자의 주거지 이외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에서 아동반환결정을 집행할 경우, 관리자에게 협조를 구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 유치원 등에서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교실 등 아동이 다른 아동과 함께 있는 장소가 아닌 집행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관리자의 협조 하에 아동을 별도 장소까지 인도 후 집행을 진행하는 등 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집행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아동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설예규 제4조에 따라 중앙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당국인 법무부는 채무자 및 아동의 등록된 주소, 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을 확인함으로써 조력 제공 가능

라. 집행 시뮬레이션

집행 참여자들과의 사전 회의를 통해 집행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집행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집행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관이지만, 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채권자, 아동의 심리상태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 등 집행 참여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는 ① 집행관, 집행보조자,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 및 그 대리인 등 집행에 참여할 관계자 간 역할 분담, ② 아동 관련 전문가 소개 방안, ③ 채무자 또는 아동의 설득 방안, ④ 채무자가 반환을 거절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의 대처방안, ⑤ 집행장소에서 최적의 동선 등 집행 당일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마. 경찰에 원조 요청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집행에 필요할 경우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집행 절차를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집행 中 단계

가. 현장 진입

집행관은 현장 진입 시 채무자 또는 현장 관리자에게 집행의 이유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은 일단 아동을 상거소지로 반환한 후 상거소지에서 아동의 양육권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아동과의 분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헤이그 아동탈취 사건 집행의 개념을 생소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기에 협약의 취지, 법원의 아동반환결정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협약 및 이행법률상 채무자가 현장에 있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채무자는 아동을 반환하게 되면 영영 아동과 이별하게 된다고 오해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에게 집행에 따른 아동과의 분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 채권자 및 대리인 면접

필요할 경우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및 그 대리인과 면접시킴으로써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감정의 대립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채권자와 대리인을 현장에 바로 들어오게 하기보다는 현장 상황에 따라 채권자와의 면접을 통한 설득이 필요한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아동과 채무자 등 분리

아동을 채무자 등으로부터 분리 시 ①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도록 하고, ② 경비노무자는 채무자 등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채무자의 팔이나 몸을 고정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아동 연령대에 따른 유의사항**

1) **영아기 아동(생후 1개월 ~ 생후 18개월) :** 애착 반응이나 낯가림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평온한 상황을 만들고,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2) **유아기 아동(1세 ~ 5세) :** 아동의 발언이나 공감능력이 미숙하고 상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거동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적절
3) **아동 전기(초등학교 저학년) :** 아동의 분석력이나 언어력이 발달 중인 점에 유의하여 복잡한 다툼은 피하고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4) **아동 후기(초등학교 고학년) :** 아동의 의사능력이 발달하여 애착과 반발 사이에서 동요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배려하고,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 등 일방 부모를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중학생기 :** 아동이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라. 아동반환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아동을 설득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도모하되, 아동 복리라는 관점에 집착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집행에 임함으로써 너무 쉽게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 4. 1.부터 신설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거부 의사는 더 이상 집행을 종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아동의 거부 의사는 이미 법원이 아동반환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아동 복지의 실현이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신에 일체의 악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고, 협약의 취지가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통한 아동의 권익보호'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이 아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법원의 아동반환결정 과정에서 이미 집행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에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현장에서 아동에게 부모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등 아동에게 선택하지 않은 부모를 버린다는 자책감을 유발하는 질문은 아동의 복리에 큰 해가 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하여야 합니다.

신설예규 시행 전에는 기존예규에 따라 아동의 거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례가 존재하였고, 이는 아동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 강제력 행사

아동의 복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득을 통한 집행을 시도하되, 자발적인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물리적 강제력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① 집행관은 신설예규 제2조 제1항, 제4항 및 민사집행법 제5조, 제257조에 따라 아동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② 법원실무제요 및 집행관감독 실무편람에서는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한다"고 기재[2]하고 있으며, ③ 헌법재판소는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것이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여 옹호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하다"고 판단[3]하였고, ④ 대법원도 "채무자가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인을 떠민 것은 집행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위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통상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4]하였습니다.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법적으로 어느 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집행관은 아동의 반환을 명한 법원의 결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저항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 2020, 36면., 법원행정처, 집행관감독 실무편람, 2023, 63면.
3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186 전원재판부 판결.
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875 판결.

민사집행법 제257조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TIP

집행관은 아동의 반환을 명한 법원의 결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저항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집행 後 단계

가. 아동의 심리적 지원

집행에 성공한 후에도 아동 관련 전문가가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일정 시점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이 집행 직후 이동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화나 심리적 지지 활동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 안정

집행 직후 채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채무자를 안정시키고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채무자에게 집행의 이유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집행으로 인해 아동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양육권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집행을 원만히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서 작성

집행관은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건의 집행이 완료된 날(집행 불능의 경우에는 집행 불능이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합니다.

Ⅳ 아동반환결정 집행 성공 사례 분석

1. 개관

2024. 4. 1. 신설예규의 시행 이후 2024. 11.까지 약 반년간 총 3건의 아동반환 강제집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서 주요 성공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권자 A 사건

- 2023. 아동 2명(10세, 8세)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탈취
- 2023. 10.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반환결정 확정
- 법무부는 자발적 반환 권고문 발송, 관할경찰서를 통한 아동의 소재 및 현황 파악, 집행 당일 주민등록상 이주 여부 확인 등 조력 제공
- 2024. 4. 탈취부모의 주거지에서 집행

이 사건에서는 ① 탈취 후 신속히 집행에 임한 점(탈취 후 9개월 만에 집행 착수)과, ② 피탈취부모가 아동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유대관계를 유지한 점, 그리고 ③ 채무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집행에 착수하여 불필요한 물리적 저항이나 감정적 대립을 피한 점 등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다만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 법률상 요건이 아님에도 채무자가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하고, ▲ 집행관이 심리전문가이기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확인됨

3. 채권자 B 사건

- 2019. 아동 2명(7세, 6세)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탈취
- 2022. 2. 대법원에서 아동반환결정 확정
- 법무부는 자발적 반환 권고문 발송, 관할경찰서를 통한 아동의 소재 및 현황 파악 등 조력 제공
- 2024. 4. 탈취부모의 주거지에서 집행

※ 2022. 2.-5.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아동의 거부 의사표시를 이유로 기존예규에 따라 집행에 실패하였고, 과태료, 감치 등 법원 결정 불응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완강히 아동의 인도를 거부하였던 사건임

이 사건에서는 ① 집행관이 채권자, 변호인 등과의 사전미팅을 통해 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점, ②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여 집행보조자를 다수 대동하는 등 철저히 집행을 준비한 점, ③ 채권자인 부친 및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동행하여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신속히 집행을 완료한 점 등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2차례의 집행 시도와 과태료, 감치 등 법원 결정 불응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아동이 반환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아동의 거부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신설예규 시행 후 사전에 철저히 집행에 대비함으로써 장기 미해결 사건도 집행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4. 채권자 C 사건

- 2022. 아동 2명(6세, 4세)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탈취
- 2024. 4. 대법원에서 아동반환결정 확정
- 법무부는 자발적 반환 권고문 발송, 국내 법률 번역본 제공,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 상담, 집행당일 출국 관련 자문 등 조력 제공
- 2024. 7. 탈취부모의 주거지에서 집행

이 사건에서는 ① 집행관이 채권자 측과 사전미팅을 통해 철저히 집행에 대비한 점, ②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여 집행보조자를 다수 대동*한 점, ③ 채무자 측 저항을 신속히 제지함으로써 마찰을 최소화**한 점, ④ 사전에 집행장소인 아파트 구조를 파악하여 방과 입구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등 최적의 동선을 검토한 점, 그리고 ⑤ 집행 현장에 아동의 조부모 등 채권자 측 가족이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활용하고, 아동에게 과거 사진이나 추억을 상기시키며 아동이 낯선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 등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집행 당일 담당 집행관 2명, 아동 관련 전문가 2명, 경비노무자 8명(男 4명, 女 4명),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 2명, 총 14명이 집행에 참여

** 채무자의 모친이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으나, 경비노무자가 채무자의 모친을 에워싸고 분리함으로써 이를 신속히 제지한 후 아동을 채권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집행

이 사건 역시 탈취 후 장기간(약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집행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V 집행 체크리스트

1. 집행 前 단계

정보 수집

양육 및 생활상황,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아동의 신상 및 성격, 채무자와 아동의 애착 관계, 탈취 후 경과한 기간 등 아동에 관한 상세 정보 수집

※ 집행관은 신설예규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당국인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에 아동 관련 정보 요청 가능

집행보조자 선임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아동 관련 전문가 및 경비노무자 선임 필요성 검토

※ 아동 관련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집행에 있어 아동이 경험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원활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여성인 경우 채무자의 저항에 따른 불가피한 신체 접촉에 대비하여 여성 경비노무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집행 시뮬레이션

아동 관련 전문가, 집행보조자, 채권자 및 그 대리인 등 집행 참여자들과의 사전 회의를 통해 참여자 간 역할을 분담하고,

- ▲아동 관련 전문가 소개 방안, ▲채무자 또는 아동의 설득 방안,
- ▲채무자의 반환 거절 또는 위력 행사 시 대처방안, 그리고
- ▲집행장소 구조 및 집행 시 동선 등 논의

※ 집행 시 아동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과 유대가 있는 친족(부모, 조부모 등)이 집행에 참여함이 바람직하고, 아동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아동과 친족 사이의 사진 등의 물품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찰에 원조 요청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에 원조 요청 검토

※ 경찰이 직접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집행 과정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집행 中 단계

현장 진입 시 채무자 또는 현장 관리자에게 집행의 이유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자발적 협조 유도

※ 특히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은 일단 아동을 상거소지로 반환한 후 상거소지에서 아동의 양육권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아동과의 분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채무자는 집행으로 인해 아동과 영구히 이별하게 된다고 오인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음)

필요할 경우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및 그 대리인과 면접시킴으로써 우호적 분위기 형성 시도

아동 관련 전문가에게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시 경비노무자는 최대한 부드러운 방식으로 아동을 채무자 등으로부터 분리

※ 필요한 경우 저항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은 허용됨

3. 집행 後 단계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이 집행 직후 이동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화나 심리적 지지 등 지원 제공

분쟁을 우호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집행의 이유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집행으로 인해 아동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양육권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Ⅵ Q&A 및 중앙당국 연락처

1. 협약상 중앙당국인 법무부에서는 집행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집행관은 신설예규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당국인 법무부(국제법무정책과)에 아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집행 지원을 위해 ① 아동의 소재 정보(등록된 주거지, 재학 중인 학교 등 확인), ② 아동의 양육 및 생활상황,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아동의 신상 및 성격, ③ 아동탈취 경위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024. 4. 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신설예규)는 기존예규와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바뀐 것인가요?

2024. 4. 이전에 적용되던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기존예규)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4. 4. 1.부터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신설예규)는 ①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기존예규의 문구를 삭제하고, ② 집행에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아동반환결정의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이 반환 절차에 거부 의사를 표시

한다는 점은 더 이상 집행불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신설예규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동은 애착관계가 형성된 탈취 부모를 떠나 피탈취 부모에게 반환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바, 아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집행관은 ① 집행에 있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아동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집행이 수월해지며, ② 집행 과정에서 아동이 겪을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측면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이 집행을 거부하고 울면서 부모인 채무자에게 매달리는데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2024. 4. 1.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신설예규)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이 반환 절차에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은 더 이상 집행불능 사유가 되지 않고, 아동의 거부의사는 이미 법원이 아동반환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탈취 아동은 탈취 부모의 영향 하에 피탈취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형성하고 함께 있는 탈취 부모에 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바, ▲협약의 취지가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통한 아동의 권익보호'에 있다는 점, ▲상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아동 탈취로 집행에 이르게 된 점, ▲이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다각도로 판단한 후 아동반환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아동이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만으로 집행이 부당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채무자 측에서 집행에 저항하면서 아동에게 접근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집행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나요?

자발적인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필요 최소한의 물리적 강제력 사용은 허용됩니다.

①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257조에 따라 아동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② 법원실무제요 및 집행관감독 실무편람에서는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③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저항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것이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6. 채무자 측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채무자 측에게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집행으로 인해 아동과 영구히 이별하게 된다고 오인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은바,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은 일단 아동을 상거소지로 반환한 후 상거소지에서 아동의 양육권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아동과의 분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외 문의사항 및 집행 관련 지원요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 02-2110-4539, 4541

별 첨

1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 29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46

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 52

4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 56

별첨 1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발효일 2013.3.1] [다자조약, 제2128호, 2013.2.14]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에서 채택되고 2011년 12월 20일 제5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가입 동의를 얻은 후 2012년 12월 13일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3년 3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 제2128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가장 중요함을 굳게 확신하고, 불법한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에 의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함과 아울러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불법적으로 어느 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어느 체약국에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

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

제2조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의 목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은 이용 가능한 가장 신속한 절차를 이용한다.

제3조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는 다음의 경우에 불법으로 본다.

가. 이동 또는 유치 직전에 아동이 상거소를 가지고 있던 국가의 법에 따라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여된 양육권을 침해하고,

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그 양육권이 실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사되고 있었거나, 그 이동 또는 유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행사되고 있었을 경우

위 가항에서 말하는 양육권은 특히 법의 작용, 또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약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에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졌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아동이 16세에 달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용이 종료된다.

제5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양육권'은 아동의 일신 보호에 관한 권리와 특히 아동의 거소지정권을 포함한다.

나. '면접교섭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의 상거소 이외의 곳으로 아동을 데려갈 권리를 포함한다.

제2장 중앙당국

제6조

체약국은 협약에 의해 중앙당국에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연방제국가, 하나를 초과하는 법제를 가진 국가 또는 자치지역기구를 가진 국가는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각 중앙당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할 자유가 있다.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 국가는 신청이 그 국가 내의 해당 중앙당국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제7조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이 협약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각 국 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소재 파악

나.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추가적 해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다.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문제의 우호적 해결 도모

라. 바람직한 경우,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 교환

마.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자국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정보 제공

바. 아동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또는 촉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의 추진 또는 확보 조치

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법률 조언자의 참여를 포함하여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촉진

아.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 제공

자.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 상호 교환 및 가능한 한 협약 적용상의 모든 장애 제거

제3장 아동의 반환

제8조

양육권이 침해되어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은 아동의 상거소의 중앙당국 또는 그 밖의 모든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대하여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신청인, 아동 및 아동을 이동시키거나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의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가능한 경우, 아동의 생년월일

다. 신청인의 아동반환 청구의 근거

라. 아동의 소재 및 아동과 함께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신청서에 다음을 첨부하거나, 다음에 의해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마. 모든 관련 결정 또는 합의의 인증등본

바. 아동의 상거소국의 중앙당국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자격 있는 자가 발급한 그 국가의 관련 법에 관한 증명서 또는 선서진술서

사. 그 밖의 모든 관련 서류

제9조

제8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당국은 아동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직접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전달하고, 촉탁 중앙당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

아동소재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 신속하게 행동한다.

관련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절차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신청인 또는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직권으로 또는 촉탁국 중앙당국의 신청에 따라 지연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수탁국의 중앙당국이 회답을 받은 경우, 그 중앙당국은 촉탁국의 중앙당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그 회답을 전달한다.

제12조

아동이 제3조상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를 당했고,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의 절차개시일에 그러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관련 당국은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한다.

이전 문단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아동의 반환을 역시 명한다.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다른 국가로 탈취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거나 아동반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3조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 아동의 일신보호를 하는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함 또는

나.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음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동 반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가 규정하는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 및 행정 당국은 아동의 상거소의 중앙당국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제공된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고려한다.

제14조

제3조에서 의미하는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상거소국의 법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이 아동의 상거소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경우라면 적용되었을 그 법의 증명 또는 외국결정의 승인을 위한 특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곧바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명하기 전에 그 이동 또는 유치가 협약 제3조에서 의미하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나 그 밖의 확인을 아동의 상거소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그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결정 또는 그 밖의 확인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신청인이 그러한 결정 또는 확인을 취득하도록 가능한 한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제16조

제3조에서 의미하는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의 통지를 받은 후,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있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아동이 반환되지 않음을 결정할 때까지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신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아닌 한, 양육권의 본안에 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수탁국에서 양육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거나 승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탁국의 사법 또

는 행정 당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의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제18조

이 장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에 관한 결정은 어떠한 양육문제의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수탁국의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반환은 거부될 수 있다.

제4장 면접교섭권

제21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를 추진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아동 반환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면접교섭권의 평화로운 향유 및 그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조건의 충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협력의무를 진다. 중앙당국은 가능한 한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한다.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체계화하거나 보호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의 수행을 개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일반 규정

제22조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상의 비용과 지출의 지급보증을 위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어떠한 담보, 보증 또는 예치금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이와 유사한 어떠한 형식도 요구될 수 없다.

제24조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그 밖의 서류는 자국의 언어로 작성하고,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공용어 중의 하나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그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체약국은 제42조에 따른 유보를 함으로써 그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그 밖의 서류에 프랑스어 및 영어 모두는 아니되지만 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

체약국의 국민 및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

에 있어서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고 그곳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각 중앙당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체약국의 중앙당국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은 이 협약에 따라 제기된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히, 절차 또는 적절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조언자의 참여로 발생하는 비용 및 지출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지불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반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비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체약국은 제42조에 따른 유보를 함으로써 자국의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에 관한 제도에 의해 지불할 수 있는 한도 외에는 이전 문단에 규정된 변호사 또는 법률 조언자 참가비용 또는 재판절차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약에 의하여 아동의 반환을 명하거나 면접교섭권에 관한 명령을 발함에 있어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적절한 경우, 아동을 이동하거나 유치한 자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방해한 자에게 여행비용,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발생한 비용 또는 지급된 비용, 신청인의 변호사 비용 및 아동반환비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 의하여 또는 신청인을 위하여 발생한 필요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이 협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중앙당국은 그 신청을 수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 중앙당국은 신청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청을 전달한 중앙당국에게 그 이유를 즉시 통지한다.

제28조

중앙당국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중앙당국에 부여하는 위임장을 신청에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이 협약은 제3조 또는 제21조에서 의미하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는지에 관계없이 직접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되거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직접 제출된 신청은 그것에 첨부되거나 중앙당국에 의해 제공된 문서 및 그 밖의 정보와 함께 다른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당국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

아동의 양육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 단위별로 적용 가능한 법제가 둘 또는 그 이상인 국가와 관련하여

가. 그 국가에 있어서 상거소란 그 국가의 하나의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상거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상거소국의 법이란 아동이 상거소를 가지는 그 국가의 지역 단위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32조

아동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각 인적 분류에 적용 가능한 법제가 둘 또는 그 이상인 국가와 관련하여 그 국가의 법이란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33조

각 지역 단위마다 아동의 양육에 관한 개별 법규를 가진 국가는, 통일된 법제를 가진 국가가 이 협약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4조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 협약과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당국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1961년 10월 5일 협약」의 양 협약에 둘 다 가입된 당사국간에는 이 협약이 우선한다. 그 밖에 이 협약은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실시를 위하여 문제발생국과 수탁국 간의 유효한 국제 법률문서 또는 수탁국의 그 밖의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협약은 체약국들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에 발생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에 대해서만 체약국들 간에 적용된다.

제39조 또는 제40조 하에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문단에서 언급한 체약국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 단위 또는 지역 단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36조

이 협약 중 어떠한 조항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이 아동의 반환에 대한 제약을 한정하기 위하여 그들 간에 그러한 제약을 내포하는 협약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합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장 최종조항

제37조

이 협약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제14회 회기 당시에 회원국이었던 국가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며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

제38조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

이 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발효한다.

가입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체약국 간의 관계에 관해서만 유효하다. 가입 후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회원국도 그러한 선언을 해야 한다. 그 선언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며 이 외무부는 그 인증등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국에 송부한다.

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국가 간에 있어서 수락선언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당시에 국제관계를 위하여 자국이 책임지는 모든 영역이나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협약이 미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될 당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선언 및 이후의 적용범위 확장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제40조

이 협약이 다루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법제가 적용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역단위를 가진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당시에 이 협약이 그 지역단위의 전부 또는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만 미친다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이 선언은 언제라도 또 다른 선언을 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선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되며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단위를 명시한다.

제41조

체약국이 행정·사법·입법의 권한을 그 국가 내의 중앙당국 및 다른 당국에 분배하는 정부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서명이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가입 또는 제40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는 것은 그 국가의 내부적 권한분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모든 국가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까지 또는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는 당시에 제24조 및 제26조 세 번째 문단 규정 중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해 유보할 수 있다. 그 외의 유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는 언제라도 이미 행해진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이전 문단에 규정된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유보의 효력이 종료된다.

제43조

이 협약은 제37조 및 제38조에서 규정된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발효한다.

그 이후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1) 그 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
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협약이 미치는 지역 또는 지역 단위에 대해서는 그 조에 규정된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

제44조

협약은 제43조 첫 번째 문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는 그 후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협약은 폐기되지 않는 한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모든 폐기는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폐기는 협약이 적용되는 일부 지역 또는 지역 단위에 한정할 수 있다.

폐기는 이를 통보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 밖의 체약국에 대해서는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45조

네덜란드 외무부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 및 제38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제37조에 규정된 서명 및 비준, 수락과 승인
2) 제38조에 규정된 가입
3) 제43조에 따라 협약이 발효하는 날짜
4) 제39조에 규정된 적용범위의 확장
5) 제38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선언
6) 제24조 및 제26조 세 번째 문단에 규정된 유보 및 제42조에 규정된 유보의 철회
7) 제44조에서 규정된 폐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0년 10월 25일에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1통의 원본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등본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제14회 회기 당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각 회원국에 송부된다.

유보

협약 제42조 및 제2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기타 서류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협약 제42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에 관한 제도에 의해 책임지는 한도 이외에는 제26조 두 번째 문단에 규정된 변호사 또는 법률 조언자 참가비용 또는 재판절차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별첨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1.] [법률 제11529호, 2012. 12. 11., 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소재 발견
2.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 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②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본안

재판을 중지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통계수집 · 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2. 인터넷 · 신문 · 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3.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 · 조사
4. 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5. 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 · 훈련

제3장 재판절차

제11조(관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2조(청구권자 등) 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심급별 재판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행명령 등) ① 법원은 심판,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의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소송비용)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번역문)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529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각 체약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 등을 침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첨 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시행 2024. 4. 1.] [대법원재판예규 제1869호, 2024. 1. 10., 제정.]

대법원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인도의 강제집행절차)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의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된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발달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의 연령, 아동의 양육 및 생활상황, 아동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2.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3. 아동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아동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아동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7조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①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

② 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 (집행보조자의 수당)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조력함에 따른 수당은 조력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 1건당 200,000원
2. 집행관의 인도 집행 동행: 1회당 300,0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여비, 숙박비 등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금액

제9조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9999호, 미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별첨 4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제정 2024.03.06 법원행정처내규 제128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적정 수의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 또는 재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중에도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1 양식의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6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 재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 그 사실을 각급 법원장, 지원장 및 집행관사무소 대표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아동 관련 전문가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별지 2 양식의 경력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집행관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장, 지원장 및 집행관사무소 대표 집행관에게 제공한다.

제4조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

집행관은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건의 집행이 완료된 날(집행 불능의 경우에는 집행 불능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별지 3 양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T. 02 – 2110 – 4539, 4541
발 행 일 2025. 2.
디자인 · 인쇄 (주)파스텔북 070-8181-2891

※ 이 책의 내용은 저자와 협의 없이 無斷再製 또는 轉載를 금합니다.
※ 그 외 문의사항 및 집행 관련 지원요청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